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-59호

#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신청 공고

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2025년 11월 21일(금)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. 9. 11.

진천군수

· 아래의 내용은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, 상세한 내용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·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(☎ 043-539-350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
## 1. 사업대상자

○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

## 2. 지원 우선순위

○ 심사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시·군에서 사업대상자 추천 제출

| | |
|---|---|
| 1순위 | ○ 1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<br>가)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고 3년 이상 경과한 자<br>나)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<br>다)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,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또는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선정 등 농식품부 주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<br>라) 시설 신축, 리모델링 등과 관련된 부지확보 및 사전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사업자(시설자금 대출에 한함)<br>* (증빙자료)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|

| | |
|---|---|
| **2순위** | ○ 2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<br>가) 단순 기자재 구입·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어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<br>나) 후계농 또는 청년 사업자(대표자 또는 상시근로자의 50% 이상이 40세 미만인 사업자)<br>* (증빙자료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<br>다) 최근 5년간 농식품부(농어촌공사(농어촌자원개발원)) 주관 온·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 및 창업 지원사업*에 참여한 사업자<br>*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터(AC) 육성사업 참여기업 |

| | |
|---|---|
| **후순위** | ○ 1~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<br>○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<br>○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 수가 동일한 경우,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<br>가) 신축, 리모델링,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를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<br>나) 최근('22년)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업자<br>* 단, '22년 이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제외<br>다)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받은 사업자<br>라)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, 사업포기 또는 자금 대출을 실시하지 않은 자 |

## 3. 지원 제외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
○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경우(지방비 포함)

*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거나 타 용도로 보조금 사용 등

○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(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용도)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지자체 또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적이 있는 경우

○ 타 농업정책사업(지자체 사업 포함)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대환 또는 납부하는 경우

○ 기존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
※ 시·군·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무효, 지원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

## 4. 대출취급기관: NH농협은행, 농축협(조합)

○ 사업대상자(대출자)가 해당 지자체와 상담을 통해 추천받거나 희망하는 NH농협은행 시·군·구 지부(지점) 또는 지역 조합

## 5.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

○ (시설 자금) 농촌융복합산업 시설(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, 체험시설 등) 설치, 제조·가공 설비 구입자금(농기계 제외)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

*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,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

○ (리모델링 자금) 기존 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, 체험시설 리모델링(증축, 개·보수 등) 제조·가공 설비 교체 등

○ (운영 자금) 생산 원료 구입,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

<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>

| 구분 |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| 운영자금 |
|---|---|---|
| 금리 | 연 2.0% 또는 변동금리※ | 변동금리 |
| 상환기간 |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| 2년 거치 3년 상환 |
| 지원 한도액 | 개소당 최대 20억원 | 개소당 최대 3억원 |

※ 변동금리 :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, 6개월마다 변동
최종 금리에서 농업인은 2.0%, 비농업인은 1.0% 지원

○ (지원 형태) 융자 지원(이차 보전)

*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임

○ (대출 실행) 실 대출 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

*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업경영체 여부, 지원 자금 용도 등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85%까지 보증 신청 가능

** 보증 여부 및 한도는 사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(**융자금 대상 농신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 확인 필수**)

○ (대출 기한)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

## 6. 융자 방식

○ 자금 시행 주체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에 따른 사후 대출이 원칙(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포함), 단,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·군·구가 확인한 사전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채권 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대출 가능

* 사업 완료 전 대출 규모 : 대출금의 30% 범위(운영자금은 70%)이내 실 소요액

– 사전대출을 원할 시 사업대상자는 소요자금에 대한 증빙자료*를 시·군·구에 제출, 시·군·구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'사업추진 실적 확인서<별지 제5호>'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
*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청구서, 납품내역서, 금융거래자료, 시설 공정률 증명자료 등

– 잔여 대출금을 실행할 경우에도 시·군·구는 현장점검, 상기 증빙자료와 '사업추진 실적 확인서<별지 제5호>' 를 검토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
* 사업실적확인서, 증빙서류,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

○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시·군·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

○ 당해 연도 융자 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가능

※ 사업 신청 희망자는 **사업신청 전**에 농협(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포함)에 대출상담을 하여 **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**를 확인

## 7.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

○ 신청(농업인→지자체)→심사(지자체, NH은행·농축협)→대출(NH은행·농축협→농업인)